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점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340

발의연월일: 2021. 9. 1.

발 의 자:정점식·김태호·서일준

박덕흠 · 김용판 · 김상훈

김태흠ㆍ이 영ㆍ이종성

김도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해안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로인한 악취·해양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.

한편, 최근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열분해유(油)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양폐기물의 재활용·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해양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이 중요하지만,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

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·재활용에 관한 사항,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제2호 중 "처리"를 "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저감"을 "저감과 이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인식제고"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해역관리청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취지를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	제5조(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
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	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	2
물의 현황조사 및 수거·정화	
등 <u>처리</u> 에 관한 사항	처리와 이에 필요한 민관
	<u>협력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	4
물 발생 예방 및 <u>저감</u> 에 관	저감과 이
한 사항	에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
	<u>식제고</u>
5. • 6. (생략)	5. • 6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7.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
	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에 관
_ (2)	<u>한 사항</u>
<u>7.</u> (생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)	제29조(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)
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	1
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	

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~ 4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②・③ (생 략)

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
- ②・③ (현행과 같음)